

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조
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
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

도: 감독한다.

부 칙

이조례는 1992년 원 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9

제안년월일 : 1992. . .

제안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내부부세제 22670-228('92. 7. 28)호 및
경기세정 22670-1328('92. 7. 31)호에 의
거 조례준칙 시달
-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설립·등록되는 시설
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
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코자
함.

□ 주요골자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9
조
- 면제대상 : 기존면제대상중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 신
설
- 면제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적용시한 :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 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 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 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 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조(면제대상) ———— ————— ————— ————— ————— ————— ————— —————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1. (현행과 같음.)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 동교육원		2. (“)		

현	행	개	정	안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3. (	"	)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4. (	"	)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신설)		5. (	"	)
		6.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

제안년월일 : 1992. 9.

제안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증설과 관련한 전문 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 보강으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함.

○ 인력보강-6명

- 행정·별정6급 : 2명(전문위원)
- 행정6급 : 1명(의정계장)
- 행정7급 : 1명(의 정 계)
- 행정8급 : 1명(의 정 계)
- 기능9등급(필기) : 1명(의사계 기록 요원)

□ 주요골자

○ 기구증설-의정계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조 직). 제3항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중 “17명”을 “2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현	행	개	정
제 2 조(조직) 제 3 항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문다.	제 2 조(조직) 제 3 항 ~위하여 “의정계, 의 사계 및 전문위원”을 문다.		
제 3 (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		